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2015. 4. 30.(목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강현삼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21일

(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강현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통위원회 위원장 변경(안 제4조)
 - 행정부지사 →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- 기타 조문 정비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교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충청북도교통위원회는 분장사무 규정 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충청북도교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범위 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운영에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</p>	<p>제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교통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----- -----.</p>
<p>제9조(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----- 위촉 해제-----.</p>
<p>제13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수당 및 여비) ----- ----- 범위에서 「충 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 례」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[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]

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.)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.
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
3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
2. 의회·정부·국회·정당·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
3.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
4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5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]

제13조(균형건설국에 두는 과)

③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9.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⑤ 교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4.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심의